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



이 약관은 예금주와 **부산은행**(이하"은행"이라 한다)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 1장 공통사항

제 1 조 (적용범위)

-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.
- 1. 외화보통예금
- 2. 외화당좌예금
- 3. 외화정기예금
- 4. 외화통지예금

제 2 조 (지급시기)

- ①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.
- ②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통지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. 다만,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조 (이자계산)

외화예금의 이자는 **다음 각호의 국제관행에**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여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다.

- 1. 영국파운드화(GBP), 일본엔화(JPY), 홍콩달러화(HKD), 싱가포르달러화(SGD) : 365 일 적용
- 2. 제 1 호 이외의 통화: 360 일 적용

제 4 조 (적용환율)

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다.

제 5 조 (지급특례)

은행은 예금주의 수표·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

- 1. 각종이자, 지연배상금, 보증료, 수수료 등
- 2. 수입어음원금,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결제대금,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 부도대금

3.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



제 6 조 (약관의 적용)

- ① 외화예금거래에는 외화예금 종류별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약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, 예금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, 거치식예금 약관, 적립식예금 약관이 적용됩니다.
- ②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
제 2장 외화보통예금

제 7 조 (이 자)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년 4 회 3,6,9,12 월 첫째 일요일(이하 "기준일" 이라 한다)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(이하 "원가일" 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한다.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한다.

제 3 장 외화당좌예금

제 8 조 (이 자)

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운 용)

수표용지교부, 수표금 지급과 지급위탁취소,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, 수표금 지급과 면책, 해지, 해지 후 처리는 "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" 제 3조, 제 5조, 제 8조, 제 9조, 제 11조 및 제 12조를 준용한다.

제 4장 외화정기예금

제 10 조 (이 자)

- ①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- ② 만기일 후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**만기후 1년이내 시** 당초 약정이율의 3/10, 만기후 1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/10 의 만기 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
-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

대하여 **다음 각호에서 정하는**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.

1.7 일미만 : 외화보통예금 이자율

2.7일 이상 1 개월미만 : 당초 약정이율의 1/10

3.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: 당초 약정이율의 3/10

4.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: 당초 약정이율의 4/10

5.6 개월이상: 당초 약정이율의 5/10

6.1년이상: 당초 약정이율의 7/10

제 11 조 (정기예금의 자동갱신과 이자)

- ① 이 예금은 예금주의 요청에 의하여 신규일에 예치기간을 정하고 예치기간내에서 1.2.3.6 개월 단위로 자동갱신기간을 지정하여 회전거래를 할 수 있다.
- ② 이 예금의 이자율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에 해당 자동갱신기간의 고시이자율을 약정이자율로 하며 이자계산기간은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 부터 다음 자동갱신일의 전일까지로 한다. 예금이자는 다음 자동갱신일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원가한다.
- ③ 만기후 이자는 제 10조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
- ④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 이후 다음 자동갱신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 할때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**외화예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윸로**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.

제 12 조 (정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)

- 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 10조 제 3 항에 불구하고 처음 예금일로 부터 계약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조 제 1 항의 이율을 적용한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다.
-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하는 경우, 그 이자는 변경전 처음 예금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5 장 외화통지예금

제 13 조 (거치기간 등)

- ① 이 예금은 예금일로 부터 7일 이상 30일이내의 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- ② 예금주는 이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2 영업일 전까지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이 자)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하고, 거치기간 후 기간에 대하여 1년이내 시 당초 약정이율의 3/10, 만기후 1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/10의 이율로 계산하여 이 예금의 이자에 더하여 지급한다.
- ② 거치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외화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

※ 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



제1조 (적용범위)

- ① **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**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이란 **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** 자유로이 **입출금하는 예금**을 말한다.
 -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조 (이자)

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기준일에 셈하여 원금에 더한다. 다만, 당좌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.

	예금별	보통예금	자유저축예금	기업자유예금	가계당좌예금
	이자계산 기준일	매년 5월, 11월 의 셋째 일요일	매년 1월, 4월,	매년 3월, 6월,	매년 3월, 6월,
			7월, 10월의	9월, 12월의	9월, 12월의
			셋째 일요일	셋째 일요일	둘째 일요일

- ② 제 ①항의 예금이자는 최초예금일(또는 지난기준일)부터 기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셈한다.
- ③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,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,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 (거래중지계좌)

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은행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① 예금잔액이 10.000원 미만이며,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- ② 예금잔액이 10,000원 이상 50,000원 미만이며,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- ③ 예금잔액이 50,000원 이상 100,000원 미만이며,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
제4조 (은행제공 수표·어음용지에 의한 거래 및 어음발행내역 등록)

- ① 거래처는 **은행이 내어준 수표 · 어음용지로 거래**하여야, 1,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내역(발행일, 지급기일, 발행금액 등)을 금융결제원의 어음 발행 관련 네트워크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준다. 다만, 거래처가 요청한 양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 (거래제한)



- ①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.
- ② 거래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금액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거래처가 은행(다른 은행 포함)과 직접거래할 때에는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.
- ③ 이 예금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은행은 통장명의인의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 (수표·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)

- ① 은행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급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.
-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. 다만,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
- ③ 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**은행이 마련한 서** 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 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.

제7조 (지급특례)

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**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**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 결제할 수 있다.

- 1. 각종 이자. 보증료. 수수료
- 2. 수입어음 원금, 수출어음 부도대전, 내국신용장(LOCAL) 결제대전
- 3.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
- 4.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

제8조 (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)

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.

제9조 (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)

- ① 은행은 당좌예금·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(대출한도 포함)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
-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

제10조 (수표 · 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)

- ①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 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어음·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다.
 - 1.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,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
 - 2.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·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(다만, 32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
 - 3.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
 - 4. "지시금지"란 글자를 수표 권면의 우측상단("약속어음", "가계수표", "당좌수표"의 우측) 여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
-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청구 할 수 있다.

제11조 (대리인과의 거래)

-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·어음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인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상의 신용거래 정보자 (연체·대위변제·대지급·부도·관련인정보),금융질서문란 정보자 및 공공 기록 정보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 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 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 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 할 수 있다.

제12조 (당좌·가계당좌예금 해지)

- ① 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 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은행은 거래처가 「신용정보 관리규약」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자(연체·대위변제·대지급·부도·관련인정보), 금융질서문란 정보자 및 공공기록 정보자에 해당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.

제13조 (당좌·가계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)

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되더라도 은행은 지급

하지 않으며 거래처는 **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**하여야 한다.



제14조 (당좌예금거래보증금)

- ①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(이하 '보증금'이라 한다)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.
- ② 은행이 제1항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거래처가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 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, 남으면 은행은 그 차액을 거래처에게 돌려준다.
- ③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1항의 보증금을 거래처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 변제로 충당한다.
- ④ 은행은 제3항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·어음 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준다. 다만,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제 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**부도처리수수료와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 음 제재금 만큼 빼고 돌려준다**.
- ⑤ 제4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.

제15조 (거래방법)

예금거래기본약관 제 4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제 2조 제3항을 신설하는 개정 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제2(이자에 관한 경과조치) 제2조 제3항의 최종거래일이 이 약관 시행일보다 전일자인 예금의 경우, 해당 예금의 최종거래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로 본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제 15조를 신설하는 개정 약관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■ 예금거래기본약관



이 예금거래기본약관(이하 약관'이라 한다)은 부산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 거래처(또는 예금주)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,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것이다.

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,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1조 적용범위

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, 거치식예금,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.

제2조 실명거래

-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.
-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·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조 거래장소

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(이하 '개설점'이라 한다)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. 다만,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, 또는 현금자동지급기·현금자동입출금기·컴퓨터·전화기 등(이하 '전산통신기기')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.

제4조 거래방법

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(증서, 전자통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 또는 수표·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. 그러나 입금할 때와, 자동이체약정·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(이하"바이오정보"),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(이하"무통장")도 거래할 수 있다.

제5조 인감, 비밀번호 등의 신고

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, 비밀번호, 성명, 상호, 대표자명,

대리인명,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다만,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(이하 "PIN-Pad기"라 한다)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,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 · 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,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.
-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,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 입금

-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·어음·기타 증권(이하 '증권'이라 한다)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.
-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(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,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, 다른 금융 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)하거나, 계좌이체(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)할 수 있다.
-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,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.
-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.

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

-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,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.
 - 1.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: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
 - 2.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: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
 - 3.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: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 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. 다만,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
-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,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 이 된 때 예금이 된다.

②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.

제8조 증권의 부도

-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 장에서 뺀 뒤, 거래처(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)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. 다만,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,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(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)가 반환청구 할 때 돌려준다. 다만, 증권 발 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 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.

제9조 이자

-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(자기앞수표 · 가계수표는 입금일)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 한다.
-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·게시하고,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, 거치식·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.
-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·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·전 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,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.
-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.

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

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(이하 "휴면예금" 이라 한다)으로 본다.

- 1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한 예금
- 2. 거치식,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
-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0조에 따라 "서 민금융진흥원"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,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 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다.
-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되며,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.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.

제10조 지급·해지청구

- ① 거래처가 예금·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-Pad기에 입력하고,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,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,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·전산통신기기·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1조 지급시기

-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.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 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.
- ② 거치식 · 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.

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

-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 야한다. 다만,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.
-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.

제13조 사고·변경사항 신고

① 거래처는 통장·도장·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·도난·멸실·훼손했을

-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.
-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, 비밀번호, 성명, 상호, 대표자명, 대리인명, 주소, 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좌번호, 주민등록번호,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.
- ③ 거래처는 주소,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에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.
- ⑤ 제①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 야 한다.

제14조 통장. 카드의 재발급 등

제13조에 따라 통장·도장·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.

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

-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 할 수 있다. 이 때,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,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.
-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. 다만,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 면책

-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,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감)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·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, 예금지급 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-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을 지급하였거나,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- 다만,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,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 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③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이나고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.
- ④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·변조·도용 등을 한 경우,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⑤ 거래처가 제13조 제1항, 제2항,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
제17조 수수료

-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- ② 은행은 제①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 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 - ③ 제1항,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제18조 오류처리 등

-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,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,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9조 예금의 비밀보장

- ① 은행은 『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』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-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(송금 포함),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·계좌번호·비밀번호(자동응답서비스(ARS)는 계 좌번호·비밀번호)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(송금)을 하고 입금인, 입금액,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 20 조 약관의 변경

-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, 거치식·적립식예금약관(이하 총 칭하여 본조에서 "약관 등"이라 한다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 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 처에 알린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(신·구조문대비표 포함)을 다음 각 호중 1 개(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 개)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, 제 1 호내지 제 3 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.
 - 1. 거래처가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(E-mail)에 의한 통지
 - 2. 거래처가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(SMS, MMS)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처가 사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
 - 3.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(앱 푸쉬 등)에 의한 통지

- 4. 거래통장에 표기
- 5. 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(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다)
- 6.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
-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는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일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.
- ⑤ 제4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제21조 약관적용의 순서

-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·적립식 예금약관 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·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.

제22조 기 타

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·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,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.

제23조 이의제기

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,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24조 위법계약의 해지

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08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3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